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6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8.

발 의 자 : 한정애 · 박희승 · 채현일
박수현 · 송옥주 · 강준현
김 윤 · 허 영 · 정준호
이병진 · 강선우 · 이재강
정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을 제공 또는 자금을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 조직에 대포폰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금품을 대가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불법성, 대포폰 등 범죄 이용 가능성 및 이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대포폰이 개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의 경우 통신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직접 신청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명의도용 방지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한편, 현행법은 통신사업자에게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발신되는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해외직구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한 발신번호 변작기(SIM-BOX)가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거짓 표시를 가능하게 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악용되고 있으나, 이를 제조·판매·수입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 확산을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나. 본인 명의로 통신 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명의 변경이 시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 제한서비스를 이용자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구체화함(안 제32조의6제3항 및 제8항 신설).

다.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SIMBOX 등)의 제조·판매·수입·소지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세관 단계에서 해당 장비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제32조의6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3항의 전담기관”을 “제4항의 전담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언

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제4항의 전담기관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하여서는”으로 한다.

제95조의2제5호 중 “제공한”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 정이용 방지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 정이용 방지 등) ① ~ ④ (현 행과 같음) <u>⑤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u> <u>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u> <u>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 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 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 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 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u> <u>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 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 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 다는 사실</u>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 ② (생 략)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의 제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④ 제3항의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⑥ (생 략)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전담기관은-----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제4항의 전담기관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⑦ (생 략)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u>제공하여서는</u>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 략)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포함한다)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전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u> ⑨ (현행과 같음)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공하거나</u> <u>송신인의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u> <u>장치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하여서는</u>-----. -----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5조의2(벌칙) ----- ----- ----- -----
--	--

1. ~ 4. (생략)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 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u>제공한자</u>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제</u> <u>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u> <u>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u> <u>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u> <u>수입·배포·판매·대여한</u>--- -
--	---